
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(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)

1. 품목분류기준 변경에 따른 관세율표 등 정비(별표1~ 별표24의2)

가. 제·개정 내용

- 「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」에 따른 품목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 물품에 적용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정비

나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다. 입법효과

- 국제공통 품목번호 기준과 우리나라 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일치시켜 원활한 통관 및 관세·무역통계 업무 지원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2. 원산지 사전심사 업무 위임규정 삭제(제52조)

가. 제·개정 내용

- 관세청장이 소속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, 이의제기의 처리 등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

나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다. 입법효과

- 원산지 사전심사업무와 사후심사 업무를 관세청장이 수행하여 업무 효율화

라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